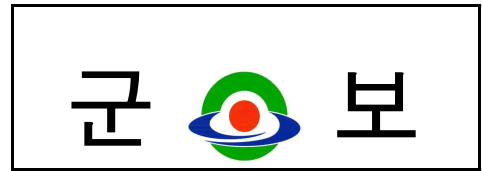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16호 2023. 1. 9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(예천군 조례 제2540호)

공 고

-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66호)
-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7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월 9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540호

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청소년”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
2. “생리용품”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.
3. “생리용품 이용권”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 및 방법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「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」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,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
2.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중단 및 환수)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
2.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
3.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

제7조(관리·감독) 군수는 지원 대상, 적정 지급 여부,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·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제정이유

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여성청소년”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함

나.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
-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 「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」 지침을 준용함

다.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-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함

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9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의 해빙기 대비 주요 시설물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「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
- “미세먼지 생성물질”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물질로

나. 사업자의 사업 활동 구체화 (안 제4조)

- 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포함

다.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(안 제8조)

-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

라.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(안 제13조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환경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uuyee829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환경관리과

3) 팩스 : 054-650-61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(전화: 054-650-653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· 대기환경보전법· 제2조제6호”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· 대기환경보전법· 제2조제11호”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미세먼지 생성물질”이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.

5. “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하며, 취약계층의 범위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다.

제4조 중 “사업 활동을”을 “사업 활동(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)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· 대기환경보전법· 제3조”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

조”로 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)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9조(종전의 제8조)제1호 중 “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·아동관련 시설, 경로당 등”을 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”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제2항 중 “군수는 · 대기환경보전법 · 제8조”를 “군수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미세먼지”란 <u>· 대기환경보전법 · 제2조제6호</u> 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.	1. ----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----- ----- -----.
가.· 나. (생 략)	가.· 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“미세먼지 생성물질”이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.
2. “미세먼지 배출원”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·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<u>· 대기환경보전법 · 제2조제11호</u>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----- ----- -----.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4. “환경취약계층”이란 영유아, <u>어린이, 노인, 임산부, 호흡기질환자,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</u>	<u><삭 제></u>

한다.

<신 설>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기측정망 설치 등)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· 대기환경보전법 ·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5. “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하며, 취약계층의 범위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-----
----- 사업 활동(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)을 -----
-----.

제7조(대기측정망 설치 등) ① --

----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)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

	<u>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
<u>제8조</u>(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)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<u>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·아동관련 시설,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대책</u> 2.·3. (생략)	<u>제9조</u>(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</u>----- -----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
<u>제9조</u>(정보제공) ① (생략) ② <u>군수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</u>	<u>제10조</u>(정보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군수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
<u>제10조·제11조</u>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11조·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 <u>제13조</u>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

<u>제12조</u> (생 략)	<u>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.</u> <u>제14조</u> (현행 제12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9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- 예천군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입학준비금을
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
-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명품 교육도시에 걸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입학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(안 제2조)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
→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s2ljh1207@korea.kr
- 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- 3) 팩스 : 054-650-63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(전화: 054-650-6199)에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
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 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